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54
----------	-------

발의연월일 : 2025. 9. 15.

발 의 자 : 서영교 · 윤준병 · 위성곤
박희승 · 임오경 · 양부남
이성윤 · 박홍배 · 김태선
김준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 경제산업 특구(위기지역, 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투자진흥지구, 평화경제특별구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제지원 제도를 두고, 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세제지원은 지역별 산업 경쟁력 강화,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전반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격차 해소 및 지역 내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지역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 12조의2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9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8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8호 및 제9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0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1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

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 ----- ----- ----- ----- ----- ----- ----- ----- ----- -----.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1. ----- ----- ---2027년 12월 31일----- -----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에	2. ----- -----

따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등록한 연구소기업 ② ~ ⑩ (생략)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 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 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 면한다. 1. <u>2025년 12월 31일까지</u> 「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 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 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2. <u>2025년 12월 31일까지</u> 「지 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 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② ~ ⑨ (생략)	-----<u>2027년 12월 31일</u>----- -----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 ----- ----- ----- ----- ----- -----. 1. <u>2027년 12월 31일</u>----- ----- ----- ----- ----- ----- 2. <u>2027년 12월 31일</u>----- ----- ----- ----- ----- ----- ② ~ ⑨ (현행과 같음)
--	---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위기지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 ⑩ (생략)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2027년 12월 31일----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2027

년 12월 31일-----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⑧ (생략)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illegible]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3. (생략)

② ~ ⑨ (생략)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
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
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
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
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illegible]

1. -----

2027년 12월 31
일-----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
세 등의 감면) ① -----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생략)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

_____.

1. -----2027년
12월 31일-----

2. (현행과 같음)

3. -----

-----2027년 12

월 31일-----

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
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
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
후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구
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
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
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
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
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
업

4. (생략)

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 1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 2025년

<u>12월 31일까지</u>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u>월 31일</u> ----- ----- ----- ----- -----
6. 7. (생략)	6. 7. (현행과 같음)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 <u>2025년 12월 31일</u>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8. ----- ----- ----- ----- <u>2027년 12월 31일</u> ----- ----- ----- ----- -----
9.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되는 평화경제특구에 <u>2025년 12월 31일까지</u>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9. ----- ----- ----- ----- <u>2027년 12월 31일</u> ----- ----- ----- ----- -----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 ⑫ (생략)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이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2027년 12월 3

1일-----

② ~ ⑫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

-----2027

년 12월 31일-----

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 ⑫ (생략)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보건 의료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ten horizontal dashed gray lines, typical of primary-ruled notebook paper.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② ~ ⑫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1. -----

-----2
027년 12월 31일-----

로 정하는 사업	-----
2.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	2. -----
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
<u>2025년 12월 31일까지</u> 입주한	<u>027년 12월 31일</u> -----
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식품	-----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사업	-----
② ~ ⑨ (생략)	② ~ ⑨ (현행과 같음)